



농식품 FTA 활용 가이드 및 우수사례 10선

본 가이드북은 농식품 분야의 FTA특혜관세 활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관리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 기본편」과, 실제 FTA 적용 활용 현장에서 FTA를 적용으로 수출 성공 등의 사례를 다룬 「II. 우수사례 10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기본 정보와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ONTENTS

I. 기본편	05
1. FTA 수출활용 프로세스	06
2. FTA 협정 발효국 확인	08
3. 수출물품 HS Code 확인	11
4. FTA 관세 혜택 확인	20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25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43
7.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46
8.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52
9. 운송원칙 확인	56
10. FTA 서류 보관	60
11. 원산지 검증	62
II. 우수사례 10선	65
1. 샤인머스켓 수출 D사	66
2. 인삼 및 인삼조제품 제조 Y사	69
3. 콤부차(건강음료) 수출 E사	73
4. 도라지청 제조 A사	76
5. 홍삼발효식품 제조 C사	81
6. 와사비파우더 제조 Z사	85
7. 원삼디(건강음료) 제조 W사	88
8. 냉동딸기 수출 S사	91
9. 말뻬엑기스 제조 T사	94
10. 전통식품(장류) 제조 N사.....	98



I. 기본편



기본편에서는 수출물품의 FTA 활용절차를 업무 순서에 따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단계에서부터 ‘원산지 검증 대응’ 단계까지 업무에 필요한 기본개념 설명과 각종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FTA 수출활용 프로세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 바이어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제조하였다고 하여
FTA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주겠다고 하면 안 돼요.
FTA 활용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FTA 수출 활용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다음 페이지부터 동 프로세스에 따라 FTA 내용을 설명함.

1) 발효: FTA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2 FTA 협정 발효국 확인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국가 중 FTA를 체결한 국가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55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요. 전 세계 중 FTA를
3번째로 많이 체결한
국가라고 해요.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기준 16개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상 국가는 55개 국가임.

FTA 협정 발효국



이 중 여러 국가와 맺은 FTA는 다음과 같음.

FTA	대상국가
한-EFTA 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공국
한-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한-EU FTA	EU 28개국(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 세우타, 멜리아,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는 EU는 아니지만, FTA 관세 혜택은 EU와 동일하게 적용함
한-중미 FTA	중미국가 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 니카라과, 온두라스는 10. 01에 발효, 코스타리카는 11.01에 발효 ※ 파나마, 엘살바도르는 추가 발효 예정이며, 과테말라는 추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 예정임.

▶ Q&A. FTA 발효국 확인

질문 홍콩 · 대만은 아세안 국가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홍콩 · 대만은 아시아에 해당되지만, 아세안 국가는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는 위 표에서 보듯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입니다.

질문 한국과 베트남과 체결한 FTA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인데, 어떤 FTA를 활용하여야 하나요?

답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관세 혜택 및 원산지 결정기준이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되요.

질문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데,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홍콩은 1997년 ·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한-중 FTA에서 중국의 영역을 '중국의 관세영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관세율 체계가 다른 홍콩 또는 마카오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수출물품 HS Code 확인

기존에 사용하던
HS Code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도 괜찮겠지요?



HS Code에 따라 FTA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해요.



1. HS 협약

HS 협약이란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무역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만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을 말함.

<예>

태국 수출자가 태국어로 INVOICE에 품명 등을 작성하면 포워딩·수입국 세관·수입국 관세사 등이 그 내용 확인 곤란함 → HS를 활용하여 관세·통계·운송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함.

2. HS Code의 이해

가. HS Code

HS 협약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HS Code·품목분류·세번부호라고 표현하며 다 같은 의미임.

나. HS Code의 구조

- ① 류(Chapter) : HS Code 맨 앞 2자리
- ② 호(Heading) : HS Code 맨 앞 4자리
- ③ 소호(Sub-Heading) : HS Code 맨 앞 6자리

<예> 간장

HS CODE의 이해



예) 2103.10.0000



- 류 (Chapter)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 호 (Heading) :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
- 소호 (Sub-Heading) : 제2103.10소호, 간장

※ HS Code는 6단위까지만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하는 각 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사용함.

다. 동·식물성 생산품의 HS 체계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품명
1	산 동물
2	육과 식용설육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류	품 명
6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 분해생산품,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류	품 명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류	품 명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 HS Code와 FTA

HS Code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FTA 적용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HS Code의 적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4. HS Code 오류 사례

가. 사례 1

① 물품설명

품명	마가린
물품설명	식물성 경화유 55%, 버터오일 25%, 수분 17%에 식품첨가물 3%를 혼합·유화시켜 제조한 마가린
물품사진	

② HS 관세율표

HSK				품명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0	00	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HSK				품명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
	90	90	99	기타

③ 결정세번

품명만 볼 때 마가린의 HS Code 6단위는 1517.10이나, 세관에서 HS 규정을 검토하여 2106.90에 분류하였음.

즉, HS Code는 품명만으로 확인하여서는 곤란하며, HS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④ 중국 관세율 비교


구분	중국 HS	FTA 미적용(2017)	FTA 적용(2017)
정	21069090	20%	19%
오	15171000	30%	30%(미양허)

CF) 미양허 : FTA 혜택을 주지 않는 품목이라는 의미

위 표에서 보듯 HS Code가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FTA 미적용 관세율 및 FTA 적용 관세율이 달라짐.

나. 사례 2

① 물품설명

물품	설명	학명	사진
동부콩	쌍떡잎식물장미목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의 종자	Vigna sinensis	

② HS 규정 및 한국 관세율

한국 HS	품명	관세율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3.3	콩(비그나종 · 파세러스종)	
0713.39.0000	기타	기본 27%(미양허)
0713.90.0000	기타	한-아세안 0%

③ 결정세번 및 조치 결과

- 수입신고 : HS 0713.90.0000, 한-아세안 FTA 관세율 0% 적용.
- 세관 : 동부콩은 Vigna종에 해당되므로 HS 0713.39.0000임.
→ 관세율 차액 27%만큼 약 8억원 추정²⁾.

2) 추정 : 부족 세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5. HS 확인을 위한 준비작업

H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구분	확인 내용	준비자료
조제식료품	원재료의 구성성분 및 함량, 제조공정, 구체적인 용도 등	품목제조보고서, BOM ³⁾ , 제조공정도, 샘플 등
원재료	▶ 1차 산품(채소·과일 등) : 신선, 냉장, 냉동, 건조 등 가공 상태	샘플 등
	▶ 첨가제(L-글루타민산나트륨 등) : 화학식, 화학구조 등	MSDS ⁴⁾ 등

6. HS Code 확인방법

가. HS Code 전문가인 관세사 자문

수출입물품 세관 신고시 HS Code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가 관세사이므로 관세사의 자문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

나. 법규집을 통한 확인

HS 법규인 관세율표·관세율표 해설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다. 인터넷을 통한 확인

구분	홈페이지 주소
한국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미국 CBP ⁵⁾	https://rulings.cbp.gov/
EU BTI ⁶⁾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hti/ehti_consultation.jsp?Lang=en

3) BOM(bill of material,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계산서) : 원재료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를 말함.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등이 기재되어 있음.

5)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출입국 관리, 세관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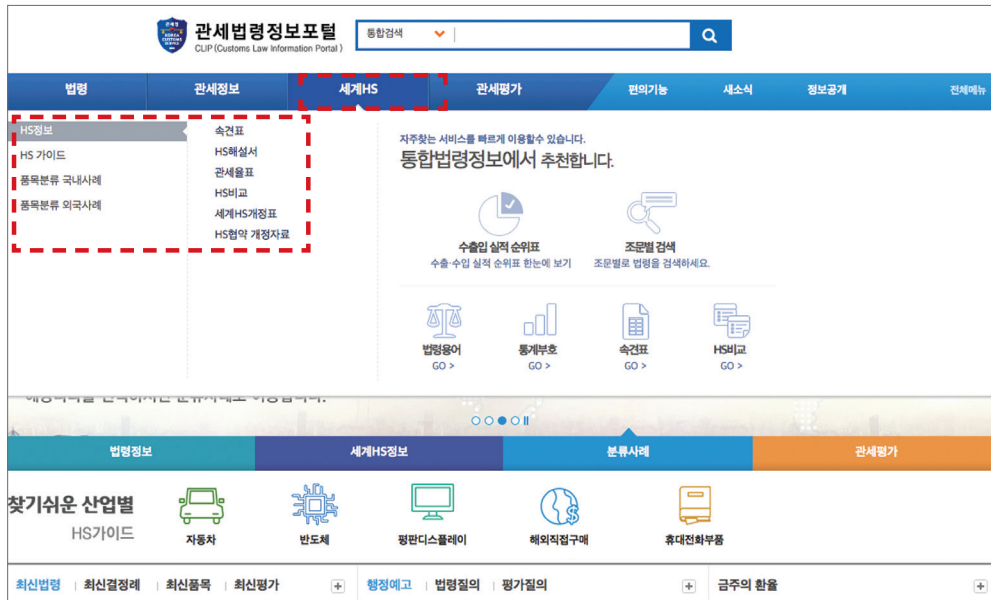
6) EU BTI(European Binding Tariff Information) : 사전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EU 세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

■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방법

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www.customs.go.kr) → ‘품목분류’ 클릭



②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③ HS 규정 및 분류사례 등을 검색하여 HS Code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3.0 (CLIP 3.0)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3.0)

통합검색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품목분류사례-대한민국(가로)(UI-ULS-0203-002S)

Home > 세계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사례 협의회결정사항 위임회결정사항

HS정보 HS 가이드 품목분류 국내사례 품목분류 외국사례

시행일자 2015-10-30 ~ 2016-10-29

검색어

초기화

전체 4,948 건 페이지당 10

시행일자	시행기관	참조번호	결정세번	수량	내용
2016-10-28	관세평가분...	품목분류2과...	8427.10-1010	1	Self-propelled truck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of counter balance type;...
2016-10-28	관세평가분...	품목분류3과...	8708.29-0000	1	BRKT ASM-F/FDR FRT LWR LH, 95024098

라. 한국 관세청 질의를 통한 확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절차

1) 신청권자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관세사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2) 신청 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3)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4) 견본 및 증빙서류 접수처

우) 305-510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4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TEL. 042-714-7535, 758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령정보포털 3.0' 접속 → '세계 HS' 클릭 → 'HS 가이드' 클릭 → '품목분류확인방법' 클릭하여 내용 확인

▶ Q&A. 수출물품 HS Code 확인

질문 수입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의 HS Code 앞 6단위와 수입국의 HS Code 앞 6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답변 HS Code 규정은 동일하나,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의 해석에 따라 HS Code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조미김

[한국] HS 2106.90(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영국] HS 2008.99(식용에 적합한 식물조제품)

질문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상에 어느 국가의 HS Code를 기입하여야 하나요?

답변 수입국에서 FTA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의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자가 HS Code를 확인한 후 꼭 수입자에게 HS Code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관발급 FTA(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입국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국의 유권해석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 Code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4 FTA 관세 혜택 확인

FTA가 발효되면
모든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아니요. FTA가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FTA 관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FTA가 발효되어도 FTA 관세
혜택이 없어요.



1. FTA 관세율 개요

FTA 관세율이란 FTA 협정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에서 정한 관세율을 말함.

HS Code별로 FTA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FTA 협정 발효 즉시 0%가 되는

물품, 일정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인하되는 물품,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FTA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나누어짐.

2. FTA 관세율 확인 방법

FTA 관세율은 FTA 협정문 상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정문 내용을 파악하여 FTA 관세율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가.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관세청 FTA 포탈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cert.korcham.net

■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를 활용한 FTA 관세 혜택 확인

① 트레이드내비 홈페이지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homepag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Header:** TradeNAVI logo, search bar with '국가선택' dropdown, and navigation links for '한-중 FTA', '원 달러 환율', '중국석유화학 반덤핑', and '중국 온라인 쇼핑'.
- Navigation Menu:** Home, News, FTA/Trade, Trade Regulation, Overseas Marketing,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Trade Support, Trade Dispute, Trade Statistics, and New Growth Industry.
- Main Content Area:**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 해외 전시회정보:** Information on overseas trade fairs.
 - 해외기업정보:** Overseas company information with a 'more +' link.
 - Trade SOS:** Trade SOS service for trade-related issues.
 - 신성장산업 수출지원 종합서비스 오픈!** New Growth Industry Export Support Comprehensive Service Open! with a '서비스 바로가기' button.
 - 성공적인 무역회사를 만들어가는 길라잡이 수출업무 단계별 정보:** A 3-step guide for export business: 01 수출준비, 02 수출진행, 03 시장확대.
 - 해외 58개국 세율정보 확인:** Check tax rates for 58 foreign countries.

② 'FTA/관세' 클릭 → '품목별 정보검색'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FTA/관세' highlighted. Below it, the '품목별 정보검색' (Product Information Search) section is visibl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대상국: 중국' (Target Country: China) and 'HS코드' (HS Code) is empty. A message indicates that search conditions need to be implemented.

③ '대상국' 선택 → 'HS 코드'란에 HS Code 6단위 입력 → '결과보기' 클릭 → '상대국 해당 HS Code'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search results for 'Soya sauce'. The search criteria are '대상국: 중국' (Target Country: China) and 'HS코드: 210310'. The results list various HS codes and their descriptions, with '2103100000 Soya sauce' highlighted.

상대국 HS Code	Description
2103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s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
2103100000	Soya sauce
2103200000	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
2103300000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Other:	
2103901000	Gourmet powder
2103902000	Aromatic bitters, 44. 2%~49. 2% of which is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1. 5% ~ 6% of which is sp
2103909000	Other

④ 수입국의 관세율(기본관세율⁷⁾, 잠정세율⁸⁾, FTA 세율 등) 정보 확인

←
관세
내국세 (1)
TBT정보문 (8)
환경규제 (0)
인증 (0)
수입요건 (15)
통관거부사유 (6.690)
▶

※ 중국은 기본관세율, ITA관세율, 잠정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타 세율적용 우선순위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기본관세율 (MFN rate) TIP

- 기본세율 28%
- 관련설명 해당품목은 잠정세율 적용대상 품목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율(MFN Rate)이 아닌 하기의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조단위 kilogram

· 잠정세율 (Interim Rate) TIP

- 잠정세율 15%
- 부과기간 2017.01.01~2017.12.31

·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TIP

- FTA 협정 세율 23.8% 타협정세율단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협정세율 조회)
- 발효일자 2015.12.20

※ 해당국가는 매년 최신의 협정세율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표형태로 제공되는 FTA 세율정보는 협정체결 당시의 HS 정보이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 및 과거세율 확인 등의 참고목적으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S Code (2012기준)	품목명	연도별세율	양허유형?
21031000	Soya sauce	연도별세율	20

나. 해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	홈페이지 주소
EU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뉴질랜드	https://www.customs.govt.nz/business/tariffs/working-tariff-document/
라오스	http://www.laotradeportal.gov.la/index.php?r=tradeInfo/index
말레이시아	http://tariff.customs.gov.my/
미국	https://www.usitc.gov/tata/hts/archive/index.htm
베트남	https://www.customs.gov.vn/default.aspx
스위스	http://xtares.admin.ch/tares/login/loginFormFiller.do;jsessionid=Zn9rhyqG6q1yTQqYFKKGkZkDTfpPnSJWktk0j6b7HhLG8m1tZ7!750585009

- 7) 기본관세율 :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음.
- 8)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기되어 있는 세율로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세율.

국가	홈페이지 주소
아이슬란드	https://vefskil.tollur.is/tollalinan/tav/
인도	http://www.cbec.gov.in/htdocs-cbec/customs
인도네시아	http://www.beacukai.go.id/btki.html
중국	http://fta.mofcom.gov.cn/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67735/
칠레	http://www.aduana.cl/arancel-aduanero-vigente/aduana/2016-12-30/090118.html
캄보디아	http://www.customs.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cambodia-2017/
캐나다	http://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7/menu-eng.html
태국	http://igtft.customs.go.th/igtft/en/main_frame.jsp
필리핀	http://tariffcommission.gov.ph/finder/index.php?page=tariff-finder3
호주	http://www.border.gov.au/Busi/cargo-support-trade-and-goods/importing-goods/tariff-classification-of-goods/current-tariff-classification/schedule-3

▶ Q&A. FTA 관세 혜택 확인

질문 관세율의 종류가 다양하던데, FTA 관세율이 가장 우선 적용 되나요?

답변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FTA 세율이 우선 적용되나, 덤핑방지관세⁹⁾ · 보복관세¹⁰⁾ · 긴급관세¹¹⁾ · 특정국물품긴급관세¹²⁾ · 특별긴급관세¹³⁾ · 상계관세¹⁴⁾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FTA 관세율보다 그러한 관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수출의 경우 FTA 수입국에서도 그러한 관세율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수입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덤핑방지관세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

10) 보복관세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관세

11) 긴급관세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

12) 특정국물품긴급관세 : 특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13) 특별긴급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

14) 상계관세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1.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가. 의미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FTA 협정 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함.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FTA 마다 달리 정해지게 됨.

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① 일반 기준

FTA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¹⁵⁾ 규정을 말함.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구분됨.

② 품목별 기준

수출물품의 HS Code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함.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생산기준 충분가공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 	
	분야별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적기준 세트물품 포장·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기준 간접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재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대체가능물품
품목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번변경기준 결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공정기준 	

2. 기본원칙

가.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O:Wholly Obtained)이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완전히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함.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어로 작업에 의해 획득한 수산물 등이 주요 대상임.

1) 식물 및 식물성 생산품

모든 FTA에서 '재배' 및 '수확'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재배 이전 단계인 종자 생산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2) 산 동물 및 이들로로부터 획득한 물품

가) 산동물

모든 FTA에서 '출생' 및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15) 총칙 :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출생 이전인 수정·임신과정 등은 FTA 영역 밖에서 수행되어도 무방함.

나) 산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대부분의 FTA가 '출생'·'사육'·'획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FTA는
다름.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규정 없음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페루,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EU	미국	칠레, 싱가포르

<예>

- ①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여 소고기를 생산한 경우
: 미국에서 '획득'된 소고기이므로 한-미 FTA 완전생산기준 충족.
- ② 스위스산 소를 EU에서 도축한 경우
: EU 내에서 '사육'되지 않은 소를 도축한 소고기이므로 한-EU FTA 완전생산
기준 불충족.

나. 역내¹⁶⁾가공원칙

1) 의의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FTA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FTA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원칙임.(영역 원칙, 역외¹⁷⁾생산 금지 원칙)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역내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2) 역내가공원칙 사례

▶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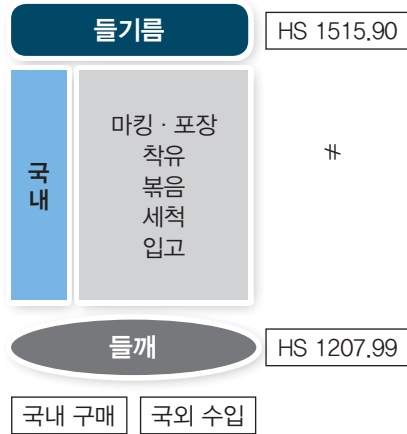
: 완제품의 HS 앞 2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2단위

16) 역내 : 'FTA 영역 내'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내'라 하면 '한국과 미국 영역 내'라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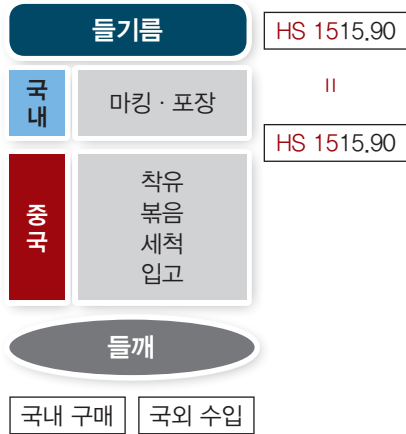
17) 역외 : 'FTA 영역 밖' 라는 의미. 예) 한-미 FTA에서 '역외'라 하면 '한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영역'이라는 뜻.

▶ 제조 국가 및 제조 공정

• 사례1



• 사례2



▶ 사례 1.

한국에서 모든 생산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중국에서 수입된, 착유한 상태의 물품을 비원산지 재료로 보고 한국에서 마킹·포장 공정만 하였기 때문에, 착유한 상태와 마킹·포장한 상태의 HS 앞 2 단위가 동일하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다. 충분가공원칙

1) 의의

FTA 영역 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제도의 기본원칙임.

단순·경미한 공정(최소공정,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 가공)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2) 불인정 공정의 범위

가) 단순 공정의 개념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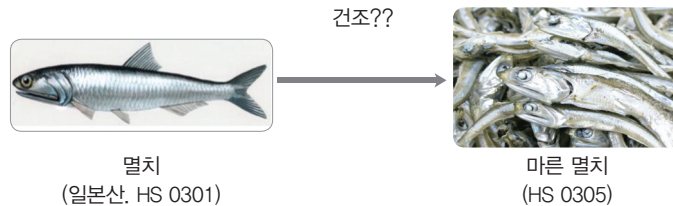
나) FTA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

운송·저장을 목적으로 상품을 보전하기 위한 작업·공정, 단순 조립, 분류·등급화, 선별, 표백, 단순 포장, 단순 혼합, 단순 절단, 단순 건조, 세트 구성 등

※ 음료 또는 의약품 등의 경우 혼합 또는 희석이 실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석을 경계하여야 함

3) 충분가공원칙 사례

▶ 마른 멸치 제조공정



▶ 마른 멸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제품의 HS 앞 4단위 ≠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앞 4단위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충분가공원칙 검토

한국에서 단순히 햇빛에 말려 건조하는 과정만 하였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 규정한 불인정 공정에 해당됨.

▶ 결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라. 직접운송원칙

1) 의의

직접운송원칙이란 당해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2) 예외규정

제3국을 거쳐 물품이 운송될 경우 제3국 세관 통제 하에 있었고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작업 범위를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봄.

동 내용은 '8. 운송원칙 확인'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함.

3. 품목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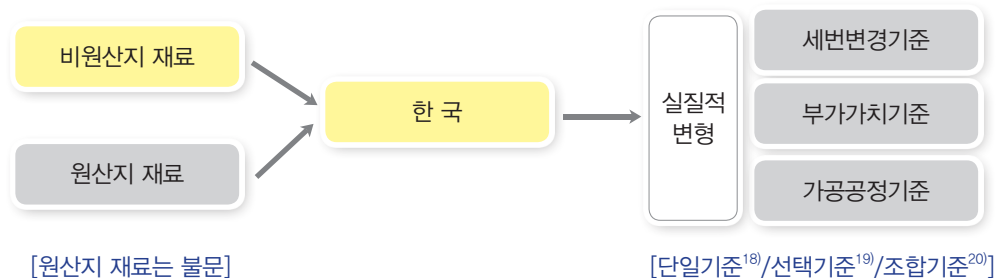
가. 개요

1) 의의

품목별 기준(PSR:Product Specific Rules)이란 불완전생산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불완전 생산품이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또는 비원산지 재료만으로 제조·생산·가공한 물품을 말함.

각각의 FTA 협정에서 HS Code 2단위·4단위·6단위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으로 나타남.



18) 단일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하나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19) 선택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0) 조합기준 : 품목별 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 두 가지 이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① 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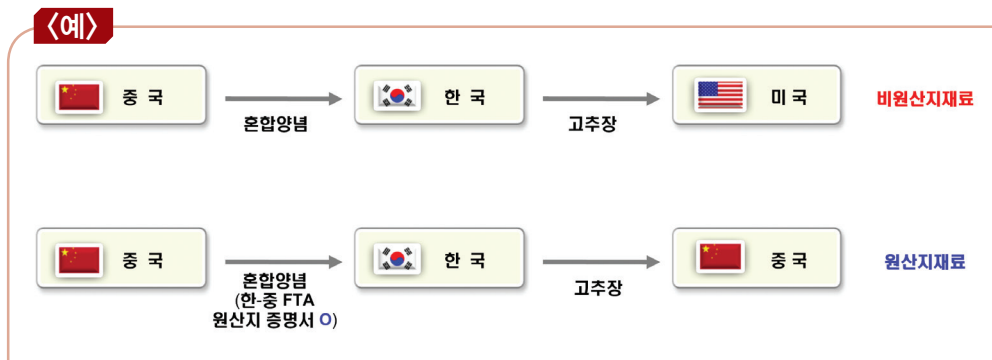
② 비원산지재료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재료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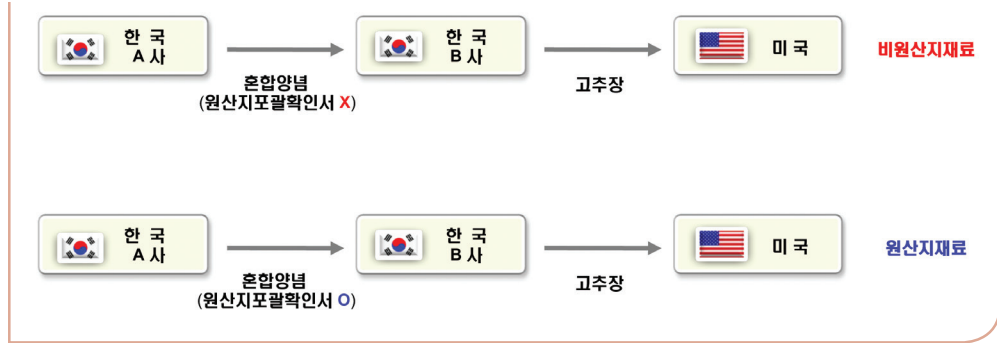
③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분

원재료 조달방식	원산지	조건
국내조달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포괄)확인서 보유)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원산지 미상 •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원산지(포괄)확인서 미수취
수입	원산지	•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 증명서 보유)
	비원산지	• FTA 수출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 FTA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재료 중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유
자가생산 ²¹⁾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비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한국에서 제조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FTA 협정문에서 규정한 원산지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됨에 주의.



21) 자가생산 : 제품 생산자가 생산한 중간 재료를 말함.



나. 세번변경기준

1) 의의

세번변경기준이란 당해 물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원산지 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는 불문

2) 유형

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Change of Chapter)

당해 물품의 HS 앞 2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들기름 (HS 1515,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들깨
(HS 1209) - 중국산

착유



들기름 (HS 1515)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들깨(제12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착유 과정을 거쳐 생산한 들기름(제15류)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들기름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들기름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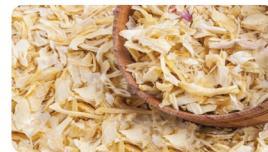
건조 양파 (HS 0712,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신선 양파
(HS 0703) - 중국산

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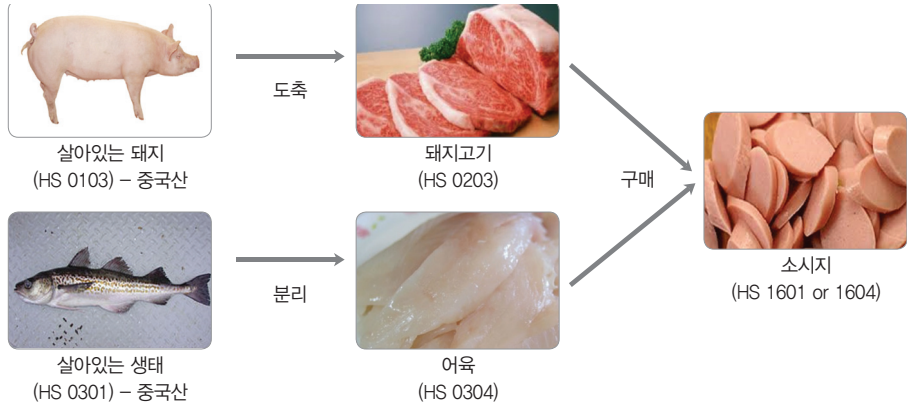
건조 양파
(HS 0712)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신선 양파(제07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생산한 건조 양파(제07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건조 양파의 HS 앞 2단위가 같으므로 건조 양파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함.

▶ 사례 3

육류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HS 1601, 한-EU FTA 품목별 기준)

제1류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돼지(제01류)를 도축한 돼지고기(제02류)와 중국산 비원산지재료인 생태(제03류)에서 분리한 어육(제03류)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소시지(제16류)를 EU로 수출하는 경우 돼지(제01류)는 비원산지 재료이더라도 상관없으나 생태(제03류)는 한국에서 수렵 등을 하여 잡은 경우에 한하여 소시지(제16류)의 원산지가 충족되므로 동 사례의 경우 원산지 불충족. 이 경우에는 생태를 한국산 또는 EU산으로 변경하여야 한-EU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

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4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캔디 (HS 1704,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설탕(HS 1701) - 중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제조



캔디(HS 1704)

비원산지(중국산)재료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캔디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캔디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캔디 (HS 1704, 한-EU FTA 품목별 기준)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그리고,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설탕(HS 1701) - 한국산
 딸기향료(HS 3302) - 중국산
 딸기색소(HS 3203) - 중국산
 물엿(HS 1702) - 중국산, 100원



캔디(HS 1704)
 EXW 1,000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의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캔디의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첫 번째,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4단위와 완제품인 캔디의 HS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두 번째, 제17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중국산)재료인 물엿의 가격[100원]이 캔디의 공장도가격[1,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두 번째 기준도 충족함.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한-EU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당해 물품의 HS 앞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 사례 1

볶은 커피 (HS 0901.21, 한-미 FTA 품목별 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볶지 않은 커피
(HS 0901.11) - 브라질산

Roasting →



볶은 커피
(HS 0901.21)

비원산지(브라질산)재료인 볶지 않은 커피(HS 0901.11)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볶는 공정을 거쳐 생산한 볶은 커피(HS 0901.21)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6단위와 완제품의 HS 앞 6단위가 다르므로 볶은 커피에 대한 한-미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다. 부가가치기준

1) 의의

부가가치기준이란 물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2)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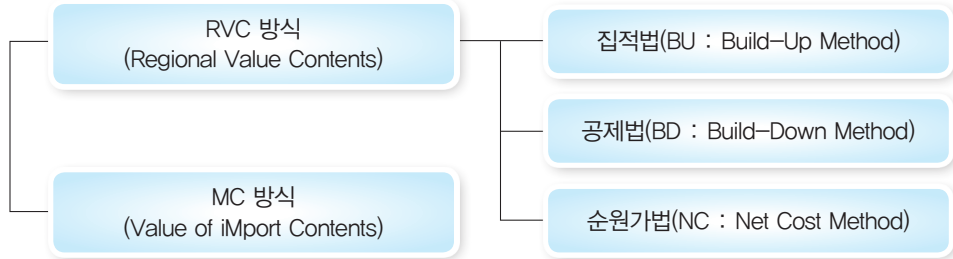
① 역내가치비율(RVC:Regional Value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요구되는 방식.
이에는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이 있음.

※ 농식품과 관련하여 순원가법을 적용하는 FTA는 없음

② 역외가치비율(MC:value of iMport Contents) 방식

: FTA 영역 밖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



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가) 집적법 (BU : Build-Up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text{집적법} = \frac{\text{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상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나)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당해 물품 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당해 물품 조정가격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공제법} = \frac{\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 \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조정가격(FOB)}} \times 100$$

다) MC법 (value of iMport Contents)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장도가격(EXW)으로 나눈 다음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MC법} = \frac{\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공장도가격(EXW)}} \times 100$$

※ EXW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

2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23)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제조자의 공장에서 수입자가 인수하는 무역거래조건

4) 농식품 관련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FTA 협정마다 사용가능한 부가가치기준이 정해져 있음.

칠레 · 페루 · 미국 · 호주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싱가포르 · 아세안 · 인도 · 중국	EU · EFTA · 터키 · 캐나다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MC

라. 가공공정기준

1) 의의

특정 제조 방법 · 가공 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

2) 사례

FTA	기준	규정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개별기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공통기준	제2부 '주'에서 역외산 씨앗 등을 심어 역내에서 재배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농식품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2) 유형

특례	내용
누적기준	원산지 결정시 상대방 국가 또는 다른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생산 과정 투입 요소(재료, 상품, 공정)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미소기준)
중간재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s, Self-produced Materials)라고 하며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그 중간재 취득비용 전체를 원산지 재료가격으로 처리하라는 규정
대체가능 물품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재료를 대체가능물품이라 하며, 대체 가능한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물품이 서로 혼합된 경우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
세트물품	통칙 3에 의거한 세트물품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로서 FTA 협정에서 정한 세트물품의 비원산지 상품 허용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세트 구성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규정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간접재료(중립요소)라고 하며, 간접재료는 상품을 직접 구성하지 않고, 사용량이 미미하므로 원산지를 불문 하거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규정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등은 본 제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통상 부속품· 예비 부품 및 공구로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
소매용 포장· 용기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에 대하여는 각각 원산지를 확인하여 정하게 되나, 전동공구 케이스와 같은 소매용 포장· 용기의 경우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결정하는 특례
운송용 포장, 용기	운송용 포장 및 용기는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 단위가 아니며 거래가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모든 FTA에서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

※ 상기 특례조항은 FTA 협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FTA 협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분야별 특례에 대하여 '기본편'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활용편'에서 설명하기로 함.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가. FTA 협정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접속 → '우리나라 FTA' 클릭



② 발효된 FTA 중 해당하는 FTA 클릭 →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FTA 일반

FTA의 개념
FTA 주요내용
전세계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의 FTA

FTA 정책요약
현황

발효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 한-인도 CEPA
- 한-EU FTA
- 한-페루 FTA
- 한-미 FTA
- 한-티키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중 FTA
- 한-뉴질랜드 FTA
- 한-베트남 FTA
- 한-콜롬비아 FTA

HOME > 우리나라 FTA > 우리나라의 FTA > 발효 > 한-칠레 FTA

한-칠레 FTA

개요	협정문 및 기본문서	국가정보	원산지정보	언론동향	참고자료
----	------------	------	-------	------	------

2004년 04월 0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 하였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타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체결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문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나. 관세청 YES FTA

① ‘관세청 YES FTA(<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접속 → ‘원산지 기준’ 클릭

통합검색

HOT >

FTA일반현황

FTA활용

원산지검증

FTA기업지원

FTA자료실

고객의소리

MY 메뉴 설정하기를 통해 즐겨찾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원산지기준(PSR)

FTA수출세율

FTA수입세율

원산지증명서발급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검증진행

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② '국가' 선택 → 'HS 코드' 선택 → 'HS 6단위' 입력 → 'search' 클릭 → '원산지 기준' 확인

전체 All FTA

 칠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미국 USA

터키 Turkey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뉴질랜드 New Zealand

중국 China
 한-베트남 Vietnam
 한-콜롬비아 Colombia

검색 search

 HS코드(HS Code)
 한글 품목명(Korea Item Name)
 영문 품목명(English Item Name)

search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품목번호 HS	분류 Division	품목명 Item	원산지 기준 Preference Criterion	C/O 기재방 법 Described how the C/O
210310	1	간장 Soya sauce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CTH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물품의 품목별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데, 국내에서 공급받은 원재료 A와 완제품 B의 HS 앞 4단위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원재료 A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가 충족된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수취하면 그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봐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에서는 원산지 재료 A의 HS 앞 4단위가 완제품 B와 동일하더라도 괜찮아요.



1. 의의

물품 자체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재료 중 원산지 재료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수취를 통해 원산지 재료로 변경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전략.

2. 원재료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기준	조 건
세번변경기준	원재료의 HS Code가 수출물품의 HS Code와 동일한 경우
부가가치기준	자체 BOM 만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3. 원산지관리전략

원재료		원산지 관리 전략
수입	FTA협정국 X	FTA 협정국으로의 원재료 수입선 전환
	FTA협정국 O	원산지 증명서류(FTA 원산지 증명서) 수취
국내	국내 제조 O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수취

▶ Q&A.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재료 관리 전략

질문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어떤 양식이며,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5]’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양식 과 작성방법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만 해당 되나요 ?

답변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같음하여 농수산물 1차 산품에 대하여는 관세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물김 수매 확인서
	마른김 수매 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	축산품(소)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예〉

배(pears)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지리적 표시 등록증·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간주함.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통합검색 란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력하고 검색하면 확인 가능함.

질문 배(pears)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으면, 재배·수확한 기록은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 배(pears)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배·수확에 대한 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정확성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1. 세번변경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생산한 홍삼절편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물품	설명	
홍삼절편	홍삼을 슬라이스한 후, 설탕·벌꿀·결정과당 등과 혼합한 당침액에 당침하여 만든 홍삼절편	

나. 한국 관세청 사례

참 조 번 호	품목분류2과-12840
시 행 일 자	2016-09-13
시 행 기 관	관세평가분류원
결 정 세 번	2008.99-9000
품 명	Red ginseng preparation; 고려홍삼절편삼 ; R.KOREA
물 품 설 명	인삼(수삼)을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벌꿀, 과당을 넣은 찜기에 넣어 당침 및 건조하여 만든 갈색계 홍삼 절편을 소매 포장(내용량:20g) - 용도 : 식용(기호에 따라 1~2편 섭취)
사 진	

다. 중국 HS 및 관세율

중국 HS	품 명	중국 관세율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99.90	기타	▶FTA 미적용 : 15% ▶FTA 적용 : 10.5%

한-중 FTA 적용시 중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4.5% 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비 실익 있음.

라.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FTA 협정	원산지기준
중국	2단위 세번변경기준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홍삼절편/20g*10EA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8.99
- 담당 : 홍길동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홍삼	1211.20	미상	70%	B사
2	홍삼농축액	1302.19	미상	1%	C사
3	백설탕	1701.99	미상	20%	D사
4	벌꿀	0409.00	미상	4%	E사
5	결정과당	1702.60	미상	5%	F사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FTA용 BOM은 홍삼절편을 만드는 제조자가 제조공장에 입고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원재료명을 작성하여야 함.


구매처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산지 부분에 '미상' 또는 '비원산지'로 기재.

비원산지재료의 HS 앞 2단위와 완제품인 홍삼절편의 HS 앞 2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홍삼절편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기준을 충족함.

2.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례

한국에서 태국으로 김치를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

가. 물품 설명

물품	설명	
김치	배추에 무채,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을 첨가하여 만든 김치	

나. 한국 HS 규정

HSK				품명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9			기타
		10	00	김치

다. 태국 HS 및 관세율

태국 HS	품 명	태국 관세율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99.9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미적용 : 30% 또는 25.00바트/kg 중 고액(율) ▶ FTA 적용 : 0%

한-아세안 FTA 적용시 태국 측 관세가 2017년 현재 30% 또는 25바트/KG만큼 절감되므로, FTA 준비 실익 있음.

라.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FTA 협정	원산지기준
아세안	한국의 HS 제2005.99.1000호(김치)에 대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6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마. FTA용 BOM 작성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Bill of Materials)

- 품명/규격 : 김치/5Kg
- 업체명 : A사
- HS Code : 2005.99
- 담당 : 김철수 실장

No	원재료명	HS	원산지	수 량		단 가	가격소계	구매처
1	배추	0704.90	미상	3.30	KG	700	2,310	B사
2	무채	0706.90	미상	0.50	KG	900	450	C사
3	고추가루	0904.22	미상	0.20	KG	11,000	2,200	D사
4	마늘	0703.20	미상	0.10	KG	6,000	600	E사
5	생강	0910.11	미상	0.05	KG	8,500	425	F사
6	소금	2501.00	미상	0.70	KG	1,000	700	G사
7	멸치액젓	1603.00	미상	0.10	KG	1,200	60	H사
8	정백당	1701.99	미상	0.03	KG	900	27	I사
9	다시마육수분말	2103.90	미상	0.02	KG	9,000	180	J사
10	포장재(PE)	3923.21	미상	1.00	PC	50	50	K사
11	케이블타이	3926.90	미상	1.00	PC	20	20	L사
12	스치로폼 박스	3923.10	미상	1.00	PC	1,000	1,000	M사
13	아이스팩	3824.99	미상	1.00	PC	150	150	N사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0	
비역내산(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8,232	
합계							8,232	

※ 완제품 1개 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함

** 부가가치 기준

RVC(공제법-아세안)

구분	A =비원산지재료비	환율	FOB (USD)	B =FOB(원화)	공제법 =(B-A)/B
원	8,232	1,100	25	27,500	70.07%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원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보고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8,232원)을 공제한 금액을 김치의 FOB 가격(27,500원)으로 나눈 비율이 70.07%이므로 김치에 대한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함.

▶ Q&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문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HS 중 물품의 HS와 동일한 것이 없는지?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HS와 물품의 HS를 정확하게 분류한 후 비원산지재료와 물품의 HS가 모두 다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누락 여부?

FTA용 BOM 작성시 제조자가 구매한 당해 물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 원재료만 기재하여서는 안 됨.

② 비원산지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처리 여부?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제조·가공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비원산지 재료의 수량(소요량)이 제조공정도 등과 일치하여야 하며, 비원산지 재료의 단가가 원재료 구매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FTA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였는지 여부?

‘4.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언급한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및 FTA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유형’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8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EU 바이어와 10,000 EURO
무역계약을 체결했는데
FTA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네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요?

한-EU FTA에서 INVOICE
기준으로 6,000EURO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원산지
증명을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문구를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1.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증명서류란 FTA 협정 상 발행 권한이 있는 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서식을 말함.

2.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통합검색 란에 원산지증명서 서식 명을 검색하면 서식 및 작성요령 확인 가능.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칠레	[별지 제8호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싱가포르	[별지 제10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한-EFTA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치즈 원산지증명서
한-아세안	[별지 제12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인도	[별지 제14호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EU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페루	[별지 제15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부록 4-가-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표 18]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미국	[별지 제17호 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터키	[별표 19]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한-호주	[별지 제19호 서식]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FTA협정	원산지증명서식
한-캐나다	[별지 제20호 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중	[별지 제24호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베트남	[별지 제22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한-뉴질랜드	[별표 20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별지 제21호 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콜롬비아	[별지 제18호 서식]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한-중미	[별지 제 24호의 2서식]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3. 원산지 증명 방식

① 기관 발급

원산지 국가의 세관 및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한국의 경우 상공회의소)이 신청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자율 발급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4.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법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중미
발급 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싱:세관 ·한:세관, 자유 무역 관리원, 상의	수출자 (선적이후 생산자 可)	·아:정부기관 ·한:세관, 상의	·한:수출검사 위원회 ·한:세관, 상의	수출자 (EUR 6,000 초과인 경우 인증수출자 필수)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서식	동의서식	각자 증명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 AK 서식	통일서식 -KIN 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2개월	12개월	1년	1년	1년

구분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발급 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호주:자율발급, 기관발급 선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기관(호주)	수출자 생산자	·중: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 국,국제무역촉 진위원회 ·한:세관, 상의	·베트남:산업 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증명서 서식	규정양식 없음 권고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4년	1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 Q&A.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질문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니까 한국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입증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입증서류란 원재료 구매부터 수출까지의 자료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미국 수출자가 그러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INVOICE 기준으로 6,000 EURO 이하 물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6,000 EURO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INVOICE에 원산지 신고서 문구를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FTA 활용' 클릭 → '인증수출자 제도'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9 운송원칙 확인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홍콩에서 수입 통관된 후 추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EU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원칙을 충족하나요?

아니요. 한-EU FTA에서 제3국 경유시 제3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즉 수입 통관되어 제3국 물품이 된 경우 운송원칙 불충족으로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1. 운송원칙 개요

직접운송원칙이란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출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FTA 특혜를 제공한다는 기본원칙임.

제3국을 거치더라도 각각의 FTA 협정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제3국 경유시 조건

제3국 세관 통제 하(=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며 하선, 재선적,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각 FTA 별로 추가적으로 제3국 경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제3국 경유시 조건	FTA
하선, 재선적, 상품 보관 필요 작업, 제3국 세관 통제	모든 FTA
단일 탁송 화물 ²⁴⁾	한·EFTA, 한·EU, 한·터키 FTA
탁송품의 분리	한·EFTA FTA
제3국 거래·소비 금지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
지리적·운송상의 이유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FTA
제3국 BWT ²⁵⁾ 거래 인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미국,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재라벨링	한·호주 FTA
파이프라인 운송	한·EFTA FTA
통과선하증권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복합·결합 운송서류 / 비가공증명서	한·중 FTA

3. 운송원칙 관련 사례

가. 통과선하증권(한-아세안 FTA)

1) 거래 개요



24) 단일탁송화물 :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선적되거나, 하나의 INVOICE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25)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 인도거래) : 관세를 보류한(=보세) 창고에 물품이 있을 때 거래되는 형태를 말함

2) 한-아세안 FTA 운송 규정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3) 판단

통과선하증권이란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B/L을 말함.(선적지 인도네시아, 도착지 한국, 경유지 싱가포르 기재된 B/L)

수입신고시 제시된 B/L은 선적지 싱가포르, 도착지 한국으로 된 B/L이므로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000억원을 추징함.

나. 비가공 증명서 (한-중 FTA)

1) 거래 개요



2) 판단

홍콩은 한-중 FTA에서는 제3국에 해당되며, 홍콩에서 컨테이너 하역·재선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함.

▶ Q&A.운송원칙 확인

질문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 증명서는 수입 후에도 발행되나요?

답변 홍콩세관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질문 중국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는 형태가 다양한데, 모든 경우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답변 컨테이너 실(seal)을 제거하지 않고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가 불필요하고, 홍콩에서 화물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YES FTA' 접속 → '공지사항' 클릭 → 제목 란에 '비가공증명서'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누름 → 검색된 공지사항 중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수정 안내' 클릭하여 내용 확인.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 해관에서 적용하는 비가공 증명서 관련 내용을 수입자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홍콩 도착 하루 전까지 비가공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FTA 서류 보관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으니 FTA 관련
자료는 폐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수입국 세관에서 나중에
FTA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꼭 보관해야 해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수입자가 받은 FTA
혜택이 취소되니까 주의하세요.



1. FTA 서류 보관 개요

FTA 관련 서류는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말함.

2.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 관련 자료

- ① 원재료 구매 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 ②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FTA용 BOM)
- ③ 제조공정도
- ④ 원재료 입고대장 · 제품 출고대장 등
- ⑤ 원산지 소명서(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⑥ 수출신고필증 · B/L 등 수출 관련 자료

3.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

- 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근거자료
- ②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재료비의 적정성 관련 자료(단가가 나와 있는 원재료 구매내역,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부가가치기준 상 분모가격(EXW 가격, FOB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내운송비용, 해상운송비용, 해상보험료 등)
- ③ 가공공정기준의 경우에는 FTA 협정에서 정한 가공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 ④ 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 ⑤ 기타 분야별 특례를 사용하였다면 그 증빙자료

▶ Q&A.FTA 서류 보관

질문 FTA 관련 자료는 몇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나요?

답변 한-중 FTA는 3년, 나머지 FTA는 5년간 FTA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았던 관세 등을 수입국 세관에 추징당할 수 있으며, 수출자의 경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11 원산지 검증

수출한 물품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일은 없겠지요?



아니요.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국 세관에서 확인 요청이 오며,
실제로 미국에서 냉동 파전에 대하여
한-미 FTA 검증 요청한
사례가 있어요.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원산지 조사)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말함.

2. 원산지 검증 방법

① 직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

② 간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것

3. FTA 협정별 검증 규정

구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일반	섬유
검증 방식	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간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직접
회신 기한	30일	10개월	2개월	3개월	30일	10개월	수입(출)자 90일, 수출관세 당국150일	- (1개월)	간접: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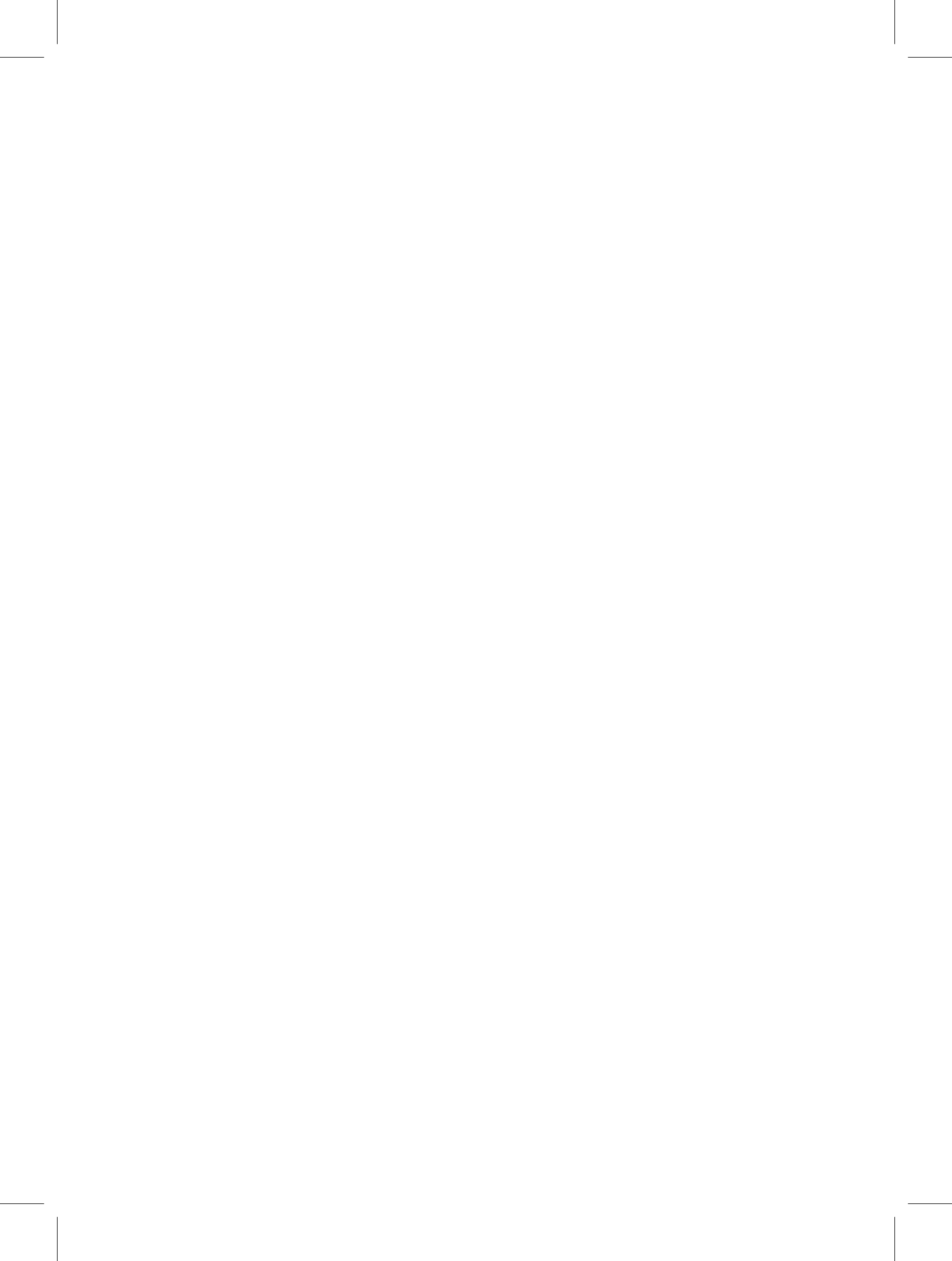
구분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한·중미
				수입자	수출자			수입 (출)자 등	수출국 관세 당국	
검증 방식	간접	직접 (간접 병행)	직접	직접	(선)간접 (후)직접	(선)간접 (후)직접	직접	간접 / 직접	직접	
회신 기한	10개월	30일	- (1월)	1개월	6개월	6개월	90일	30일	150일	30일

▶ Q&A.원산지 검증 확인

질문 미국 수입자가 미국 세관에서 FTA 검증이 나왔다고 하면서 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내왔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오른쪽 상단에 '1.요청일자(Date of Request)로부터 30일 이내에 FTA 관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해 보내야 해요.(기간 연장 30일 가능)

※ 원산지 검증시 회신기간이 경과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가 부인됨에 주의.



01 샤인머스켓 수출 D사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떤 것 부터 시작해야지?

D사는 경남에 소재한 신선과일 전문 수출기업으로 주로 포도(샤인머스켓)를 수출하고 있고 배와 사과도 수출한 경험이 있다. 2019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회사의 대표님은 그 동안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직원이 군입대를 하는 바람에 매우 큰 곤란을 겪었다.

당장 베트남에 있는 수입자가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스스로 처음 서류를 준비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더군다나 다른 시즌에 비해 가을(9~10월)에 접어들면 한달에 두세번 씩은 꼭 수출이 진행되는 탓에 우선 급한데로 관세사에 발급대행 업무를 맡겼지만 대행 때마다 발생하는 용역수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 지원효과 톡톡히!!

2019년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진행된 교육에 참여했다가 알게 되어 사업에 지원신청을 했고 마침내 금년도 사업의 마지막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톡톡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진행된 수출 건에 대해 서류준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까지 긴급하게 총력 지원을 했다.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업무는 직원이 진행해왔던 일이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서류를 챙기다 보니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서류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서류들도 있었다. 컨설팅을 시작한지 2개월도 안 되 3건의 베트남 수출 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신선농산물 FTA 원산지 판정 쉽지 않아요.

실제 신선농산물의 경우 발급하는 기관의 심사자마다 실제 거래관계를 통해 판단하는 심사 필요서류의 종류와 요구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D사는 수출전문기업이고 실제 신선과일(샤인머스켓)은 전량 P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해서 수출한다. 이 거래단계에서 협정에서 요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성 제품'의 완전생산품 요건에 대한 입증은 P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농가)가 가능하고, 해당 입증확인을 전제로 P 영농조합법인은 D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을 발급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영농조합의 조합원은 개인이 따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을 통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등을 발급 받고 있어 사실 P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등이 아니라면, 그 서류 자체가 D사에 전달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결국, P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등은 P 영농조합법인이 조



합원 농가로부터 받아야 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대체하게 되고, P 영농조합법인은 D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정리를 통해 D사는 P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이에 더해 P 영농조합법인의 수출전문 조합원 농가(총 4개)의 GAP인증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수매거래확인 증빙을 확보하여,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까지 할 수 있었다.

▶ 이제는 자신 있다!!

본 컨설팅사업을 통해 완전생산입증서류에 대한 정리부터 거래단계별 업무절차에 대한 모든 실무적 개념이 완성되고 나서, D사는 'FTA Agri 간편형'라는 농수산물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실무에 완벽히 적용하면,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될 것이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면 'FTA Agri 간편형'을 통한 간편한원산지 판정 이후에 발급기관에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당일) 받을 수 있어 업무가 거의 자동화 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고 보면 된다. 시스템의 사용법에 사용자가 완벽하게 적응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무료로 원격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D사는 알알이 박힌 포도 만큼이나 알차게 컨설팅 수혜를 보았고, 그 동안 잘 몰랐던 신선농산물의 원산지관리의 시작부터 서류발급까지 전 과정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었다. D사 대표님은 바이어가 언제 요청을 하든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이제는 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02 인삼 및 인삼조제품 제조 Y사

수출농가 원산지 관리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Y사는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인삼 생산자 단체로 충북지역의 인삼재배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여 홍삼 및 홍삼조제품, 수삼 등을 FTA 협정국을 포함한 1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모든 조합원이 수출상품 제조를 위한 대상농가는 아니고, 매년 수출물량은 30~50개 농가로부터 수삼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부터 수삼, 홍삼과 홍삼조제품으로 20여종이 넘는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거나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협정국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해외박람회에도 참석하여 바이어 미팅을 진행하다보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협조는 계약의 필수조건이 되어 있었다.

▶ 인삼조제품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숨어있다!!

우선, FTA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품의 ingredient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주력 상품을 카테고리 나누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확한 수출신고를 준비하였다.

더 나아가 수출 상품화를 추진하는 제품과 원재료가 모두 확정되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주력상품의 수입국 반응정도에 따라 한-EU,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를 고려함)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다보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삼과 인삼조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거의 대부분 상품 또는 원재료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거나 한국산(원산지 재료)임을 확인해야 경우이다.

HS CODE	협정	원산지기준
1211.20	한-EU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 된 것
	한-베트남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된 것
	한-중국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된 것
1302.19	한-EU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한-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 된 것
	한-베트남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한-중국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된 것
2106.90	한-EU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 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4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한-아세안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 된 것에 한정한다.
	한-베트남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 된 것에 한정한다.
	한-중국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따라서 FTA 원산지관리의 초점은 이러한 완전생산품 요건이 적용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완전 생산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Y사는 본 컨설팅을 통해 완전생산입증 서류관리를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Farm, FTA Agri를 통해 일괄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출농가 원산지관리도 똑똑하게 하세요.**

‘인삼’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농장정보, 생산 능

력 확인자료 등의 증빙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신선농산물(=완전생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을 통해 발급코자 할 때는 '생산자명부'와 더불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같은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FTA Farm의 '생산자 관리' 메뉴에서는 생산자명부 등록 및 이력관리,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제 생산자 여부와 생산 농장현황 정보를 확인·출력할 수 있다.

완전생산 입증의 핵심은 어떠한 형태로든 재배, 수확, 채취, 채집을 실제 이행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제시하는데 있다. 예컨대, 이러한 증빙은 재배일지, 생산일지, 영농일지로 가능하다. 다만, 재배일지 등의 작성양식, 방법 등이 생산자 조직·단체별로 매우 상이하고 농가별로 매일 기록하기 쉽지 않아 재배·수확 이행을 실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FTA Farm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실무에서 사용하는 '입고/검수증'에 생산자가 증명하는 '재배·수확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생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준양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수출자와 생산자(농가)가 상이한 유통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출제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작성·등록할 수 있는 메뉴를 이용하여 실제 생산사실 확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원산지조사 대응 시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FTA Farm에서는 해당 거래년도(또는 거래기간)에 확정된 생산자 명부를 통해 자동작성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자에 제공하고 바로 서명하여 생산자 조직·단체에 제출토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담당자는 이러한 간편 기능을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라는 번거로운 업무를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가 보유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서류상의 인증 취득자, 인증유효기간, 발급일자, 대상농가정보, 대상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산자 조직·단체가 생산자(조합원 농가)를 포괄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에 갈음하여 수출자에 제출할 수 있다.

▶ Y사의 원산지관리 버전업 완성!!

Y사는 '19년부터 수매농가부터 위의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여 완전생산 입증서류 관리를 시작하였고, '20년도부터는 완벽하게 FTA Farm을 통해 조합원(농가)으로부터 입증서류 수집 및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일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기초로 인삼을 기재로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도 FTA Agri를 활용해 가능해진다. FTA Farm과 FTA Agri 사용자라면 우리가 생산·공급·수출하는 완전생산품과 관련된 원산지조사(사후검증)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Y사의 본격적인 관리는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머지않아 FTA 일등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03 콤포차(건강음료) 수출 E사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기업의 고민

E사는 식초를 기재로 한 가공음료를 수출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출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출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FTA특혜관세활용지원사업을 통해 E사의 원산지관리 담당자인 이사님한테 요청이 왔다. 이번에 외국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건강음료’를 태국으로 수출할 예정인데, 급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E사는 제조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제품의 HS Code를 확인한 다음 실제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의 FTA를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그 수출제품의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해당 식품을 구성하는 원재료리스트를 살펴본다. 이때, 각 원재료의 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요하면 해당 원재료의 소요량과 구매단가까지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 FTA 활용의 열쇠는 ‘네’가 쥐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제조자가 아니면 위에 설명한 정보의 상당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상기 E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F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HS CODE	협정	원산지기준
2202.99	한-아세안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게다가 해당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기준은 ‘부가가치기준’ 이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제품 수출시 수출제품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역내산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판매비와일반관리비+목표이익+기타경비+국내운송비)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 제품이 되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대한상의 또는 관세청)를 발급받고 아세안 국가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 중 1211.20(인삼), 1302.19(식물성 추출물, 농축액)이 있다면 해당 재료의 경우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즉, 재배, 수확될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본 제품은 1211.20(인삼), 1302.19(식물성 추출물, 농축액)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제조에 투입되지 않으므로 상기 예외기준에 대한 검토는 제외되었다.

E사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이러한 역내부가가치의 비율을 서류로 입증해야 했다. 결국 F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F사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상 원재료 리스트와 제조원가(원재료 가격포함)는 E사에게 공개하기가 어려웠다. F사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해서 E사한테 달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부가가치기준 계산식의 분모값은 수출제품의 FOB가격(엄밀히 말해 다르지만 FOB가격에 가깝다고 본다)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수출 성공의 열쇠는 우리 ‘모두’가 쥐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이들의 중간에서 양쪽의 정보를 받아 조합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왕이면 서류 발급까지 진행하는 컨설턴트가 있으므로서 가능해진다.

F사는 다른 어떤 제조 협력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졌고, 컨설턴트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단가를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20여종, 충분가공을 입증하는 제조공정도도 하루 만에 정리해줄 정도로 매우 협조적이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E사는 며칠 만에 수출과 까다로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제품의 HS Code와 협정국에 따른 원산지기준 때문에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 이러한 협조가 따라주지 않아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F사와 같은 바람직한 협력기업을 만난 E사가 날개를 달고 더 많은 수출제품의 판로를 개척해나가면 덩달아 F사도 매출이 늘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협력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04 도라지청 제조 A사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유리한 것으로 준비하세요!

A사는 강원도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수십년간 추출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다양한 추출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조미료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미국, 베트남,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면서,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을 요청을 받았다.

인력이 부족하고 FTA 경험이 없는 A사는 어떻게 FTA를 준비하여야 할지 고민하던 중, 농수산물 식품 수출지원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무료로 「 2019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신청과 동시에 컨설턴트가 신속히 배정되었으며, 신청품목에 대하여 식품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공정도를 바탕으로 HS CODE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컨설턴트는 신청품목 중 하나인 도라지청은 건조한 도라지를 선별·추출·여과·농축·포

HSK	품명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9	기타
90	기타
3	제1211호의 추출물
39	기타



장·검사 공정을 통해 당해 물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제조공정도와 공장 견학을 통해 확인하고, HS CODE집·HS 해설서·한국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물품인 도라지청은 HS 1302.19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컨설턴트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HS 1302.19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두 FTA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협정	원산지기준
베트남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아세안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 인삼이 안들어가는 도라지청, 손쉬운 한-베트남 FTA

먼저,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기준은 첫 번째,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앞 2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앞 2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원산지가 충족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두 번째, 제1211.20호에 분류되는 인삼의 경우에는 원산지재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04
시행일자	2016-02-03
유효일자	2019-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도라지100 (Chunho Balloonflower Juice 100); R.KOREA
물품설명	도라지를 물로 추출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용도 직접 음용

결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응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갈색계 액상의 도라지 추출물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	

도라지청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재료는 건조도라지와 물이며, B 농협과 인제군으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비원산지로 보고 건조도라지(제12류), 물(제22류)의 HS 앞 2단위와 도라지청(제13류)의 HS 앞 2단위가 다르므로,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충족되며, 제1211.20호에 해당하는 인삼이 없으므로,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를 받지 않아도 완제품인 도라지청은 쉽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 완전생산기준으로 충족하기 까다로운 한-아세안 FTA

이번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완전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첫 번째, 원재료 중 건조도라지는 도라지를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B 농협에 소속된 농가들이 도라지를 재배·수확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영농일지, 재배·수확 사실 기록 등), B 농협으로부터 원산지 입증서류(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관세청장 인정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완전생산되었다고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쉬우나, 농가부터 농협까지 재배·수확·유통 기록은 보관하는 것은 어려움)

두 번째, 원재료 중 물은 한국에서 추출·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인제군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무엇인지 A 사는 고민이 되었다. 이에 컨설턴트로부터 물에 대한 상·하수도 영수증을 받은 경우 원산지 입증자료로 볼 수 있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신 (경유)	관세법인(관세사)귀하
제목 민원질의 회신(원산지입증자료 관련)	
<p>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귀사의 민원내용은 '지하수와 수돗물의 원산지입증자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p> <p>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서 등),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출되었다는 입증서류, 공급내역자료(예시: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등)등으로 입증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p>	

세 번째, 유리병의 경우에는 유리를 만드는 성분부터 한국에서 추출·취득하여야 하며, 종이상자의 경우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목재부터 한국에서 재배·수확하여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유리병과 종이상자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고민하던 중, 컨설턴트로부터 소매용 포장용기에 해당하는 유리병과 종이상자의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질의 2] 해당상품 생산에 사용된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나목'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동 재료는 상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원산지증명이 손쉬운 FTA를 활용하자!

도라지청에 대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과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FTA	난이도	입증자료
한-베트남	하	▶ 제조·가공 사실 확인자료
한-아세안	상	▶ 농가 : 도라지 재배·수확한 사실 구비((영농일지, 재배·수확 사실 기록 등) 및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 발급 ▶ 농협 : 제품제조업체로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 발급 ▶ 향후 원산지 검증시 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A사는 2019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원산지 기준을 쉽게 충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베트남으로 수출함으로써 베트남 수입자는 관세율 5%만큼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 사례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비교하여 유리한 FTA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05 홍삼발효식품 제조 C사

출물품의 HS CODE 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세요!

C사는 수십년 간의 발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삼발효식품을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기업이며, OEM방식으로 제조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FTA 원산지 증명을 요청을 받았다.

인력이 부족하고 FTA 경험이 없는 C사는 어떻게 FTA를 준비하여야 할지 고민하던 중, 농수산 식품 수출지원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무료로 「 2019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을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HS CODE가 어디로 분류되는지 모르면 관세평가분류원으로!!

C사 담당자는 바이어가 요청한 아침행복발효홍삼(발효홍삼농축액, 비타민 B1 엽산염, 비타민 B2 등을 조제된 앰플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을 컨설팅 대상품목으로 신청하였으며,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컨설턴트는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물품의 HS CODE · 관세율 ·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C사가 동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수출시 사용하던 HS CODE 6단위는 2202.99이었으며, 컨설턴트가 HS CODE는 2106.9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HS CODE가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관세청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기로 정리하였다.

칭찬! 관세평가분류원,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

제이에스관세법인의 2019년 11월 04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건(품명 : 아침행복발효홍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통보)합니다.

- 아 래 -

1. 신청사항

- 신청인 성명 : 송기영
- 신청인 상호 : 제이에스관세법인
- 신청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6길 10 (논현동)동아빌딩 203호
- 수출입자 상호 : 이현구발효연구소
- 통관예정지세관 :

2. 물품설명

- 품명·규격
Other products of red ginseng; 아침행복발효홍삼
- 물품설명
 - 홍삼농축액을 유산균 발효하고, 갈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비타민 B1, 엽산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액상을 갈색유리병에 넣은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제시규격 20ml × 30EA)
 - 용도 : 음용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결정내용

- 품목번호
2106.90-3029
- 분류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 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이에 컨설턴트와 함께 물품설명서,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공정도, 샘플을 준비하여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였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유권해석으로 명확해진 FTA 준비

C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HS CODE에 따른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과 컨설턴트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S	원산지기준
2202.99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106.90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두 기준 모두 제1211.20호에 해당하는 홍삼은 한국에서 재배·수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원산지입증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같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기존에 C사에서 사용하던 HS CODE 2202.99에 대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하여야 하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40% 기준은 $\{ (FOB \text{ 금액} - \text{비원산지재료비}) / FOB \text{ 금액} \} \times 100$ 으로 계산한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원재료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면, 동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HS CODE 2202.99에 대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동 물품의 원재료의 HS CODE 앞 4단위와 완제품의 HS CODE 앞 4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제조자의 원재료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C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HS CODE에 따른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보다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은 충족하기 쉬운 기준입니다.

동 사례를 통해 FTA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가 수출물품에 대한 제조공정과 원재료 성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06 와사비파우더 제조 Z사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야 대금을 결제해 준다고?

Z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식품제조 회사로 근로자수 8명의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제품개발부터 생산, 영업까지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나 여건상 수출보다는 국내 유통이 주된 사업영역이지만 최근에 국내 A사를 통하여 와사비파우더를 EU로 수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A사는 EU의 바이어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조사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인증 절차가 간소하다는 사실을 알고 A사는 제조자인 Z사에게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통보하게 됨.

▶ 인증수출자 !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Z사의 대표이사는 A사의 요청에 당황하여 다급한 마음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급한 마음에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주관하는 FTA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속 전문 관세사가 즉시 회사로 방문하여 대표이사 면담을 시작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컨설턴트에게 “막연하지만 다른 회사도 하는 것을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작은 회사라고 무시받고 싶지 않다. 꼭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겠다. 도와달라.” 라고 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첫걸음 시작 !

첫날부터 컨설팅은 바로 시작이 되었다. 우선 대상물품인 와사비파우더의 HS CODE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통하여 제2103.90-9090 호로 확인이 되었다.

다음은 BOM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을 생성하기 위한 기초 원재료 사용 내역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내역과 실제 구매내역 등을 대조하여 혹시 모를 원재료의 누락이나 변경 사항등을 확인하고 바르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산출된 원재료들에 대한 품목분류와 공급자 정보등을 확인하여 BOM 구성을 완료하였고 충분 가공원칙을 소명하기 위하여 생산설비 사진을 반영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였다.



완성된 BOM을 근거로 한-EU FTA 판정과정을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조 회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서류작업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서면확인서라는 서류가 지니는 의미, 원산지전담관리자의 중요성, 원산지증명서 작 성대상과 서명카드등 각각의 서류 작성 및 관리 방법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 드디어 우리도 인증수출자 취득 !

컨설턴트인 FTA 전문 관세사는 컨설팅 요청을 받았을 때 기업이 너무 영세하여 과연 인증수출 자 인증을 위한 기초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염려가 컸지만, 첫 방문을 통하여 기업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어느 기업보다도 빠른 피드백을 통하여 FTA 인증수출 자 취득을 위한 자료생성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협력 덕분에 품목별인증수출자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신청 후 불과 10일만 에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Z사는 A사에 인증수출자 취득사실을 통보하여 이상없이 대금결제가 마무리 되었고, A 사의 대표는 “남들에게는 쉬운 인증인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작은 기업에게는 인증서라는 서류 한 장이 너무 크고 소중하다.”라며 FTA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였다.

대표이사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기업보다도 큰 만큼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경험한 FTA의 활용 및 관리역량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07 원삼디(건강음료) 제조 W사

알쏭달쏭 FTA, 아하 그렇구나!

W사는 충주시에 소재한 건강음료 제조회사로 근로자수 6명의 작은 기업으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다.

W사의 박과장은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간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몰라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FTA 관리에 대한 업무지식 습득이 필요함을 느끼고 FTA 교육을 다녀오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모든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아, 때마침 알게된 FTA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사업 담당 컨설턴트 관세사는 방문한 첫날부터 FTA와 수출통관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공세에 시달렸지만, 적극적인 박과장 덕에 즐겁게 컨설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첫날의 FTA와 원산지관리에 대한 교육은 관세사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거의 박과장과 관세사의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박과장은 인터넷 검색과 집합교육시 습득되어 조각조각 산재되어 있던 지식들이 일대일 교육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하나로 꿰어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아하, 그렇구나!

▶ FTA 관련서류 정리하다.

FTA 관련서류를 검토한 컨설턴트 관세사는 일부서류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BOM이 전체 생산수량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자료 해석이 다소 난해하여, 최소판매단위 기준으로 소요량과 재료비를 작성함으로써 이해되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

지를 생산 관점에서 “한국산”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FTA 관점, 즉 해당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접수하여 원산지에 대한 근거서류가 확보되었을 때만 “한국산”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미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인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RVC”로 기재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 왜 몰랐을까? 인증수출자

박과장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의 어려움과 발급기관 담당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일부 요구사항은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판단되어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하고 취득을 권유하였다.

박과장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간소화와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마찰 또는 불필요한 업무 수행을 피하기 위해 인증수출자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 수출자의 필수 아이템 인증수출자 취득 !

담당 관세사는 인증수출자 신청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BOM과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였고, BOM은 FTA 인증수출자 신청 양식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삼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 40%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격비중이 높은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확인서 접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리병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문제는 인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고 인삼을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단순히 유통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완전생산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박과장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진행과 인삼 공급업체의 협조로 생산자에 대한 경작지 증빙 서류와 인삼수매 서류를 확보하여 인증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의 인증수출자 신청 심사를 거쳐 드디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였다.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신청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된 FTA 관리를 유지하고 활용하여 앞으로는 수출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원산지 심사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08 냉동딸기 수출 S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S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1인 무역업체로 한국 제품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거나, 아세안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중개업체이다. 회사의 대표는 최근 냉동딸기를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초 계약 체결시 인도네시아 바이어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받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막상 수출이 다가와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이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고 인도네시아 수입자에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진행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이에 S사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절차를 여러곳에 문의하였으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던차에 마침 aT에서 주관하는 “2019년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고 신청하게 되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첫걸음 시작!

1. 거래구조 파악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먼저 방문하여 거래구조를 파악하였다.

A농협에서 소속 작목회에서 딸기를 채집하여 냉동작업을 진행하고, 냉동딸기 완제품을 B사에 판매한다. B사는 S사에 구매한 냉동딸기 완제품 상태 그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S사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진행한다.



2. 자료 작성 시작

우선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S사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하기 위한 자료 작성을 시작하였다.

A농협에서 냉동딸기 채집 및 제조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A농협에서 작성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전화상으로 자료 설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다.

최초 회신온 자료에 대해 검토 후 수정사항을 안내하였고, 이러한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끝에 드디어 오류없는 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다.

3. 관세청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세관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세관에서는 두가지 보완이 나왔다. 첫째, 세관에서는 A농협과 작목반의 관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A농협과 작목반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둘째, A농협 소속 작목회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을 요구하였다. GAP 인증서를 제출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하게 발행받을 수 있었다.

▶ 벼랑끝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다!

S사는 거래계약 파기 위기에 몰렸으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첫 냉동딸기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1인 기업인 S사 대표님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1인 기업이 많을 것 같은데,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09 말뚝엑기스 제조 T사

말뚝엑기스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기 원산지증명서가 다 같은게 아니었다고?

T사는 제주도 애월에 위치한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비타캔디, 한라봉차,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직원수 15명의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최근 베트남 바이어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말뚝엑기스와 홍삼을 기반의 건강기능식품인 마력정을 소량 샘플 수출한 상태였다.

다만, 1차 수출건의 경우 베트남 현지 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량 수출이었던 만큼 베트남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에 T사의 김대리는 상대적으로 발급이 간편하였던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큰 문제없이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바이어는 베트남 현지에서 1차 수입통관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바로 5배가 넘는 추가 수입오더를 보내오면서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VK FORM으로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 듣는 단어에 김대리는 대수롭지 않게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기존대로 발급하여 바이어에게 송부하였다가 바이어의 재요구에 당황하였으며 VK FORM에 대해 다시 확인해본 결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FTA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첫 걸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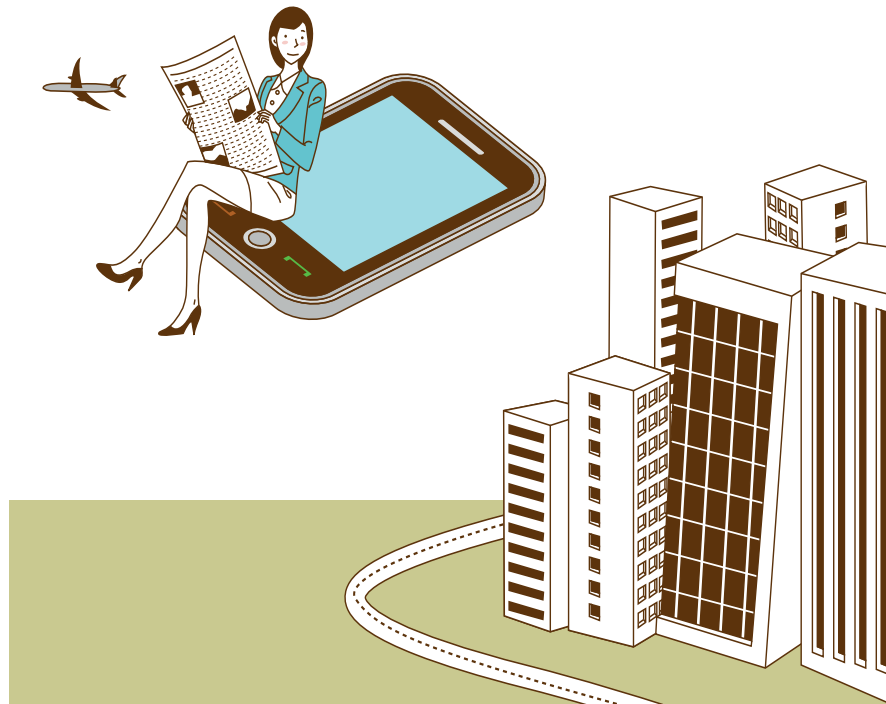
T사의 김대리는 서둘러 식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상시로 지원해주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즉시 신청하여 FTA 전문 관세사와 신속한 미팅시간을 갖게 되었다.

T사의 대표이사 및 김대리는 어렵게 얻은 베트남 바이어를 잃고 싶지 않았던 만큼 그 간절한 마음을 관세사에게 전달하였고 관세사 또한 베트남 바이어가 요구하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에 들어가게 된다.

▶ 생산공정 확인 및 HS코드 검토를 통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베트남 바이어의 VK FORM 요구가 있는지 이미 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던 관계로 관세사는 미팅 첫날부터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김대리와 인터뷰를 진행 후 해당사의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정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충분가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핵심 생산공정이 제주도 내 해당사의 공장에서 실제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구체적인 원산지판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T사 제품은 건강 향상을 위한 보조제로써 건강기능식품이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었던 만큼 의약품은 아닌 만큼 HS코드는 2106.9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차 수출건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의 현지 HS코드와도 일치함에 따라 2106.90호 기준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였다.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H or BD40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해당 핵심원재료의 역내산 사용이 필수조건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충족이 용이하고 판정의 효율성이 좋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전략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초서류 중 하나인 BOM(원재료명세서)을 품목제조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기재된 각 원재료별 정확한 HS코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CTH를 판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김대리에게 설명하여 향후 업체 스스로 FTA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일부 원재료에 대한 공급사 협력이 필수 !

BOM을 최종 작성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수행 관세사는 한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와 동일한 원재료가 두가지나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원재료 공급협력사는 육지에 있는 1개사였다.

다행히도 T사 대표이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공급협력사 대표와 유선통화를 진행하여 해당 업체 제품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로부터 역내 원산지확인서를 획득함으로써 CTH 기준을 최종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다.

역내산으로 최종 원산지판정이 되었음을 확인한 관세사는 이외에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를 추가로 작성 지원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완료된 상태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접속하게 된다.

▶ VK FORM 발급이 가져다 준 기적 !

김대리는 미리 준비한 원산지 자료를 기반으로 무사히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원본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EMS 발송하였고 며칠 뒤,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한통의 메일이 도착하였다.

“보내주신 원산지증명서 덕분에 1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바로 3차 오더 발주를 3배 더 늘려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VK FORM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바이어 또한 T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노력에 매우 감사해하고 있었으며 향후 더 많은 수출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표이사과 김대리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였다.

다만, 이러한 기쁨을 느끼는것도 잠시, 또다른 미국 바이어로부터 한라봉차에 대한 수입 발주가 도착하였다.

미국 바이어 또한 수출 조건 중 하나는 한-미국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었으나 김대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금번 한-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던 경험을 되살려 자신있게 FTA 활용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T사의 대표이사는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수행 관세사와 소규모 업체를 위하여 이런 좋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출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0 전통식품(장류) 제조 N사

우리제품은 자신만만!! 원산지 증명서는 후덜덜?!

N사는 순창에 소재한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건전한 음식문화의 구현과 우리 고유의 맛을 계승 세계적인 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맛의명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업체로, 내수 위주의 사업으로 수출은 간헐적으로 몇 차례 진행한 정도였다.

공장장인 김전무는 이번에 바이어로부터 인도네시아 수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구를 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에 캐나다로 수출을 진행할 때도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았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될 것 같아 발급이 불가하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매번 바이어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고, 수출을 하려면 바이어의 요구를 맞춰줘야 하겠는 걸. 어떻게 해야하지...”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FTA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었다.

▶ 뜯구름 FTA, 손에 잡히다.

컨설턴트로부터 FTA 교육을 받으면서 원산지의 중요성,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판정절차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원산지판정을 위한 자료로써 BOM과 원재료 가격, 수출품과 원재료에 대한 HS,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등 그 동안 뜯구름 같던 FTA가 손에 잡힐 듯 다가 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원재료에 대한 HS는 큰 벽으로 다가왔다. 김전무의 제품에 대한 지식과 컨설턴트의 품목분류 지식이 협업하면서 BOM 원재료에 대한 HS의 빈 자리를 채워갈 수 있었다.

▶ 내친김에 인증수출자까지...

장류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4단위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이지만, 고추장에 대해서는 제7류와 제9류의 원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BOM의 원재료에 HS 코드와 재료비를 정리하고, 가판정을 해보니 일부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를 접수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원산지확인서를 접수 대상을 최소화 하면서 여러 품목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로 1차 선정하고 그 중 접수가 가능한 품목을 파악한 후 간장에 대해서는 4단위세번변경 충족을, 고추장과 된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40%이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산지 충족 전략을 수립하였다.

모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에서 거래명세서 상의 주소와 원산지확인서 상의 주소가 상이하여 주소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품대금은 본사와 거래하면서 실제 영업행위는 영업점과 거래하기에 발생한 문제로 보이나, 깔끔한 서류 관리를 위해 수정하기로 하였다. 협력사의 원산지확



인서를 접수한 후 최종 원산지판정한 결과 간장은 4단위세번변경을, 고추장과 된장은 부가가치 40%를 만족하여 원산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담당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 제도와 인증수출자 활용시 업무 효율성을 설명하였고, 김전무는 향후 수출을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리도 인증수출자 !

이미 원산지판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인증수출자 신청 준비는 어렵지 않았다. 다만, 개별서류에 오류가 없는지와 증빙서류간 불일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수정해가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완성한 후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였다. 꼼꼼히 작성된 서류 덕분에 인증은 수월하게 완료되어 드디어 N사도 인증수출자가 되었다.

한편, 원산지판정과 인증수출자 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네시아 수출건은 간접수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수출품 선적과 함께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원산지확인서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란에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수출자에게 제출하였고 수출자는 이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어렵지 않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상담시 걱정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

N사는 당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급한 불을 끄고, 힘들고 까다롭게만 여겨졌던 원산지관리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화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했다.

앞으로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다져진 원산지관리 체계에 따라 이어지는 수출건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